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 안내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구직급여를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개인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 필요

☞ 지정된 실업인정일 2일 전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가 전송되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시,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음단계 버튼을 누르면 다음 실업인정일 확인 가능

□ '1차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다음날부터 14일째가 되는 날(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8일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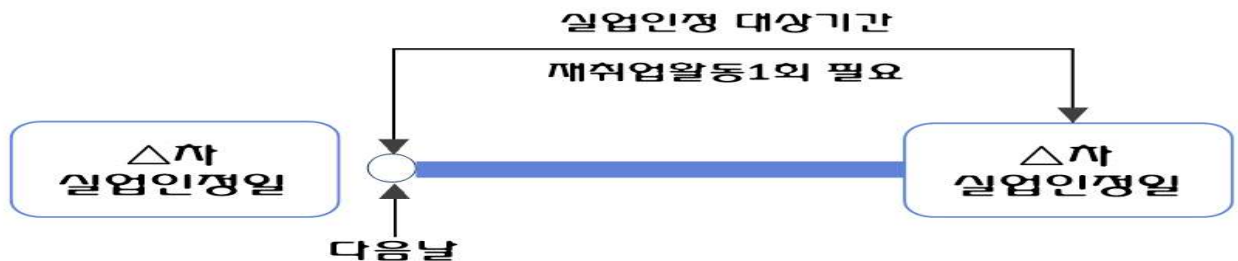
○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는 매 28일째 되는 날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됨(공휴일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아래는 수급기간 120일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일 예시이며, 개인별 구체적인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서 안내

구분	날짜	제출서류
수급자격신청일	3.30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차 실업인정일 (14일 후)	4.13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2차 실업인정일 (28일 후)	5.11	재취업활동 내역 증빙자료
3차 실업인정일 (28일 후)	6.8	
4차 실업인정일 (28일 후)	7.6	
5차 실업인정일 (28일 후)	8.3	

2. 재취업활동 의무

-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함



- 실업인정 신청을 할 때 재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 할 수 있음
-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를 학습하고 1차 실업인정일 수강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비고
워크넷 입사지원	불필요	<u>구직활동에 해당</u>
구인 응모	면접확인서 또는 공고+명함	<u>구직활동에 해당</u>
면접 응시	면접확인서	<u>구직활동에 해당</u>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자체학습	1차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1차 실업인정일에만 인정,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고용센터별 취업특강 자료 자체학습	학습확인서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학습	학습확인서	코로나-19 조치기간에만 인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특강	불필요	-

☞ 구체적인 재취업활동별 증빙자료는 4. 재취업활동 관련 안내 참조

3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 ✓ 실업인정일 당일 00:00 ~ 17:00 전송가능
- ✓ 실업인정일이 아닌 날은 전송 불가(전송버튼의 비활성화)
- ✓ 가급적 오전에 전송요망
- ✓ 미전송 시 실업인정 불가



사용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 개인서비스 →
실업인정신청
클릭

☐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
확인 가능

☐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 '구직활동'을 한 경

우,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란에 체크,

증빙자료 제출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작성** (※)워크넷
- 신청자중 65세 이상 대상자는 구직활동을 **안**만 입력하

! 워크넷 연동-증빙자료 불필요

! 구직활동 사항 기재-증빙자료 첨부

활동내역보기 **구직활동확인(워크넷)**

구직활동일자 (기간)(2016/06/21 ~ 2016/06/30)	사업체명	인사담당자(담당부서)	사업장 주소(E-mail)	전화번호
모집직종	보수수준	구직방법	응모방식	활동결과

구직활동확인(워크넷)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인정기준 >> 보기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입력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강령 es」계좌해, 직업훈련, 부당배고 구제자, 알자리희망 프로그램 등

과정 세부내역(훈련기관,과정명,기간 등)

선택하세요

> 첨부구비서류

※ 구직활동내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하지 않으면 전송이 불가함
※ 첨부할 수 있는 최대파일크기는 2M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첨부할 수 있는 확장자는 <txt, chm, tiff, jpeg, png, psd, rar, 7z, docx, ppt, pptx, xls, xlsx, hwp, pdf>만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 첨부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파일명에 특수문자 [!, * & % \$ # @ ~ - :]를 넣지마세요.)

찾아보기

□ '구직활동 외 활동'을 한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에 체크,
증빙자료 첨부

☞ 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에 체크하고 증빙자료로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제출

□ 모두 작성하면

> 실업인정내역

실업인정일수	10 일	구직급여산출내역	43,416 * 실업인정일수 (= 근로내역)
지급액 (예정)	434,160 원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내역이 있을 경우 지급액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다음실업인정일 (예정)	2016/07/28 (7회차) ※ 다음 실업인정일은 예정된 날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 출석일(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전송(전송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전송이 완료 되었는지 전송상태를 꼭 확인하신 후 인터넷 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전송하시고 실업인정일 17:00가 지나면 더 이상 회수(수정)가 되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전송을 원할 때는 현재까지 작성된 내용

⚠ 반드시 전송을 눌러야 신청 완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0

수정 삭제 전송

반드시
전송 버튼 클릭

4 재취업활동 관련 안내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조가 재취업수당 및 연임급여 5 수급 사유의 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 일정

»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I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조가 재취업수당 및 연임급여 5 수급 사유의 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 일정

» 구직활동 개관

각각의 구직활동에 적합한 증빙자료 필요

1



방문 면접

2



우편 / 팩스

3



인터넷 입사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3개월 취업수당 및 연금급여
5. 수급 사유의 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 일정

>> 인터넷 입사지원 종류

3

인터넷 입사지원

1

워크넷 (workgo)

WORKNET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구직활동내역 조회)

2

취업포털 사이트

srframin JOBKOREA

- 잡코리아, 사람인 등
- 구인광고 + 취업활동증명서

3

E-mail 입사지원

- 구인광고 + 보낸편지함

4

홈페이지 입사지원

- 구인광고 + 지원완료화면 (지원일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그날도 열심히

인정교육센터

23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3개월 취업수당 및 연금급여
5. 수급 사유의 사항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 일정

>> 3-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
☒ 불필요 - 구직활동내역조회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그날도 열심히

인정교육센터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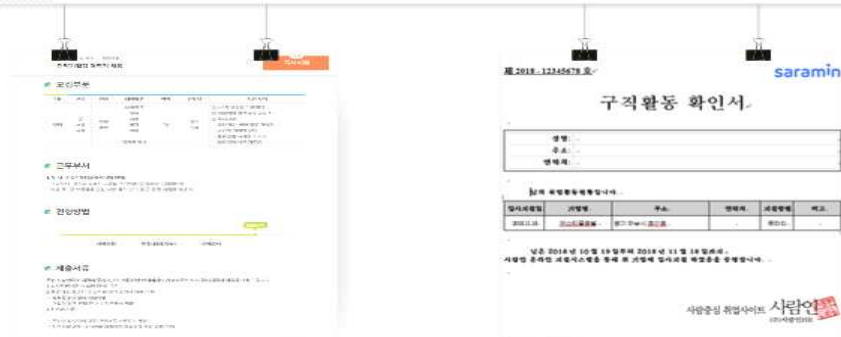
3-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 시

• 워크넷 구직활동 증빙자료에 대한 추가 안내 •

- ☑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구직활동에 대해 필수 모니터링 진행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2회 이상 확인 시 입사지원 제한
- ☑ **워크넷 구직정보 비공개 전환**
 - 비공개가 원칙이나 수급자 등의 및 고용센터 서비스 지원을 원한다면 공개
 - 공개 전환 시 워크넷 상의 모든 구직활동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3-2.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 시

증빙자료 > ☑ 구인광고 + 취업활동증명서



3-2.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입사지원 시



3-3. e-mail로 입사지원 시



증빙 자료

- 구인공고 + 보낸편지함
- 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지원제도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3개월 취업수당 및 연금급여
5. 수급사유리사함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알림

>> 직업훈련 증빙자료

1

직업 훈련

증빙자료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4주 단위로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구직활동 2건 면제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32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지원제도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 3개월 취업수당 및 연금급여
5. 수급사유리사함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알림

>> 특강/프로그램 증빙자료

2

취업특강
교육자료 학습

증빙자료

학습 확인서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 유튜브 '고용노동부' 채널 또는 '고용센터 취업특강' 채널 강의 3개 과정 (1개 과정당 4개 동영상) 중 1개 과정 시청
- 취업특강 1개 과정 시청은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해당 취업특강의 학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송

고용센터 취업특강 교육자료

- 안내서의 '고용센터 취업특강 교육자료' 자체 학습
- 교육자료 1개 과정 시청은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교육자료 학습 후 학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송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33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37가 해외취업수당 및 연임급여 5. 수급사유리사정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 일정

» 해외취업 증빙자료



해외취업

»

증빙자료

해외취업
활동계획서

+

해외취업
활동 내역서
(순차 제출)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

1. 실업급여제도 및 취업준비카드 2. 실업인정 절차 3. 재취업활동과 증빙자료 4.37가 해외취업수당 및 연임급여 5. 수급사유리사정 6. 실업인정 신청 7. 서류 작성 8. 요약 및 향후 일정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의 예시

1.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하여 본인이 수첩에 기재한 경우 
2. 동일업체 중복지원 
3. 이미 구인이 종료된 업체에 입사지원 
4. 구인 계획이 없는 사업장의 명함 또는 전단지를 제출한 경우 
5. 사업 등을 하는 친인척, 친구 등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6. 구인공고의 희망직종·경력·학력·자격증 필수 여부 등과 비매칭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교육